

유출차단시설·집수시설 등의 설치·운영기준(제34조 관련)

1. 삭제 <2014.12.31.>

2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출차단시설 등에 대한 설치·운영기준
가. 일반사항

- 1)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2)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,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, 시설 내 조업장해 시 수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그 조치의 설명 등을 적은 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3)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나. 집수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

- 1) 집수시설은 자연유하식 구조로 하며, 집수시설의 규모는 사업장에 대한 초기 강우량과 소화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규모, 대상 독성물질 종류, 저장·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2) 집수시설은 평상시에는 비워 놓아야 한다.
- 3) 수압·토압·지진,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, 바닥과 벽은 처분 시점까지 충분히 밀봉하여야 한다.
- 4) 집수시설은 과충전이 제때에 인지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.
- 5) 다수의 저장소 또는 배출시설에 하나의 공동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용적량은 개별 시설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양 중 최대의 용적량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·운영기준

- 1)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의 역류능력은 수질오염물질 종류 및 시설 종류·용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2) 수압·토압·지진,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, 빈틈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포집공간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,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한다.
- 3)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